

11. 담임교사, 순회교사,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,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지도교사,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 체육대회 시·도대표,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, 영재교육 담당교사, 다문화특별학급 담당 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(3.0점 만점)

- 가. 담임교사 등 근무경력 : 1월마다 0.021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7점)
- 나. 중등교원 임용 후의 모든 경력 중 2004.12.31.자 평정 시에는 3년만 인정하고 연차적으로 1년씩 가산하여 평정함
- 다.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 지도교사는 실습소 당 1년에 1명 인정
- 라.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(2003.01.01.부터 적용) 인정범위 : 경기도교육청, 경기도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,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(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, 경기도과학교육원),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(NTTP 연구년제 파견 제외),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(전 경기도호국교육원),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(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),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(전 경기도평화교육원, 경기도예절교육원), 경기도학생체육관, 경기도공동실습소, 경기도학생야영장, 경기도학생수영장, 경기도교직원수덕원(※ 신설교 겸임교사 근무경력은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에서 제외함)
- 마.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육대회 시·도대표,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를 직접 지도한 실적은 업무처리과(체육건강과(전 학생건강과, 체육건강교육과), 진로직업교육과(전 진로직업정책과, 과학직업교육과))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
- 바. 영재교육담당교사 가산점은 2009.03.01.~2022.02.28.까지 실적을 평정하되, 부여대상은 영재 교육을 3년 이상 담당하고, 영재교육 기초연수(60시간)를 이수하고, 현재 과학영재학교·영재교육원·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업무 담당자로서 연 30시간(교과수업시간) 이상의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 한다. (단, 영재학급당 1명 이내만 부여한다.)
- 사. 중등 다문화 특별학급의 유공 교원의 선택가산점은 평정기준의 담임, 순회, 파견교사 영역으로 부여하며 다문화교육 업무담당부장, 특별학급 담임교사, 특별학급 교과 담당교사, 특별학급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에 한하여 부여한다. (2017.03.01.부터 적용)(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-5093(2017.4.21.), 경교인2017-16(2017.5.23.) 단, 다문화교육담당교감의 유공교원 선택가산점은 2017.3.1.-2019.2.28. 까지만 인정(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-17809(2018.12.24.), 경교인2019-01(2019.01.07.))

12. 국제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 평정(0.72점 만점)

- 가. 국제올림피아드(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환경, 정보)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 실적에 대하여 1월마다 0.021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7점)
- 나. 2003.01.01. 이후 실적부터 평정

13. 발명교실 지도교사 가산점 평정(0.72점 만점)

- 가. 2007.03.01.~2022.02.28. 실적 평정(※ 2021학년도까지 인정)
- 나. 1월마다 0.012점씩 가산(1개월 미만은 일 0.0004점)
- 다. 가산점 부여 대상 : 60시간 이상의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받고, 발명교실 설치학교에서 발명교실 담당주무의 역할을 담당하거나, 연 40시간 이상의 발명교실 업무담당 및 지도교사 실적이 있는 교원
- 라. 발명교실 설치기관별 가산점 부여 인원 : 2009.02.28.이전 1명 이내, 2009.03.01.이후 3명 이내